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의 정원 60명(4급 또는 5급 7명, 5급 32명, 6급 21명)을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고, 전문직공무원 정원을 배정할 수 있는 하부조직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「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6. 00. 00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10. 26. ~ 11. 2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7항 중 “각 과장”을 “산업정책과장·산업일자리혁신과장·산업환경과장·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·중견기업정책과장·중견기업지원과장”으로, “기업정책팀장”을 “지역경제총괄과장·지역경제진흥과장·입지총괄과장·자동차과장·조선해양플랜트과장·유통물류과장은 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, 기업정책팀장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6항 중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, 디스플레이가전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, 디스플레이가전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사무관·행정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6항 중 “각 과장”을 “자원안보정책과장·석유산업과장·가스산업과장·산업공급망정책과장·소재부품장비개발과장”으로, “각 팀장”을 “철강세라믹과장·화학산업과장·무역안보정책과장·무역안보심사과장·기술안보과장은 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, 각 팀장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4항 중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사무관·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사무관·행정사무관·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6항 중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사무관·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사무관·행정사무관·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”으로 한다.

제38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호(중전의 제1호) 중 “한미통상협력과”를 “한미통상협력과, 중남미대양주통상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(중전의 제2호) 중 “중동아프리카통상과”를 “중동아프리카통상과, 인도통상협력과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산업정책실 내 다음 각 목의 하부조직

- 가. 지역경제정책관: 지역경제총괄과, 지역경제진흥과, 입지총괄과
- 나. 제조산업정책관: 자동차과, 조선해양플랜트과
- 다. 중견기업정책관: 유통물류과

2. 산업성장실 내 다음 각 목의 하부조직

- 가. 산업기술융합정책관: 산업기술정책과, 산업기술시장과, 산업규제혁신과
- 나. 산업인공지능정책관: 산업인공지능정책과, 인공지능기계로봇과, 인공지능바이오융합산업과

다. 첨단산업정책관: 배터리전기전자과, 첨단민군협력과, 섬유탄소
나노과, 디스플레이가전팀

라.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: 반도체정책과

3. 산업자원안보실 내 다음 각 목의 하부조직

가. 산업공급망정책관: 철강세라믹과, 화학산업과

나. 무역안보정책관: 무역안보정책과, 무역안보심사과, 기술안보과

6. 통상교섭실 내 다음 각 목의 하부조직

가. 통상협정정책관: 통상협정정책기획과, 통상협정이행과, 통상협
정활용과,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

나. 통상협정교섭관: 통상협정협상총괄과, 통상협정상품과, 통상협
정서비스투자과, 통상협정무역규범과

다. 다자통상법무관: 통상법무기획과, 세계무역기구과, 다자통상협
력과, 통상분쟁대응과

제40조의3제2항 중 “각 과장”을 “반도체정책과장은 부이사관·과학기술
서기관·서기관·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, 첨단반도체과장·반
도체생태계과장”으로 한다.

별표 3 중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“24”를 “17”로 하고, 행정사무관 “64”
를 “32”로 하며, 행정주사 “24”를 “3”으로 하고, 사무운영서기보 4 다음
에 “수석전문관·행정전문관·통계전문관·공업전문관·시설전문관·
전산전문관·방송통신전문관·행정부전문관, 통계부전문관, 공업부전문
관, 시설부전문관, 전산부전문관 또는 방송통신부전문관 78”를 신설하며,

“수석전문관·행정전문관·통계전문관·공업전문관·시설전문관·전산전문관 또는 방송통신전문관 18”를 삭제한다.

별표 4 중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“24”를 “17”로 하고, 행정사무관 “63”을 “31”로 하며, 행정주사 “24”를 “3”으로 하고, 사무운영서기보 4 다음에 “수석전문관·행정전문관·통계전문관·공업전문관·시설전문관·전산전문관·방송통신전문관·행정부전문관, 통계부전문관, 공업부전문관, 시설부전문관, 전산부전문관 또는 방송통신부전문관 78”를 신설하며, “수석전문관·행정전문관·통계전문관·공업전문관·시설전문관·전산전문관 또는 방송통신전문관 18”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「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」 제9조에 따른 전직시험 합격자 수가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된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수에 미달하여 전문직공무원 정원을 배정할 수 있는 보조기관과 및 보좌기관에서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2029년 11월 5일까지 산업통상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 다만,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한 전직시험 이후 해당하는 존속기간까지 「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」 제6조에 따른

경력경쟁채용시험 또는 같은 영 제9조에 따른 전직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가 추가로 발생할 때마다 발생한 합격자 수만큼 감소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산업정책실) ① ~ ⑥ (생략)	제9조(산업정책실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⑦ 산업정책실에 산업정책과 · 산업일자리혁신과 · 산업환경과 · 지역경제총괄과 · 지역경제진흥과 · 입지총괄과 · 자동차과 · 조선해양플랜트과 · 엔지니어링디자인과 · 중견기업정책과 · 중견기업지원과 · 유통물류과 · 기업정책팀을 두며, <u>각 과장은 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, 기업정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· 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.</u>	⑦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산업정책과장</u> <u>· 산업일자리혁신과장 · 산업환경과장 · 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 · 중견기업정책과장 · 중견기업지원과장</u> --- <u>지역경제총괄과장 · 지역경제진흥과장 · 입지총괄과장 · 자동차과장 · 조선해양플랜트과장 · 유통물류과장은 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· 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, 기업정책팀장</u> ---.
⑧ ~ ㉑ (생략)	⑧ ~ ㉑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산업성장실) ① ~ ⑤ (생략)	제10조(산업성장실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산업성장실에 산업기술정책	⑥ -----

과 · 산업기술시장과 · 산업규제 혁신과 · 산업인공지능정책과 · 인공지능기계로봇과 · 인공지능 바이오융합산업과 · 배터리전기 전자과 · 첨단민군협력과 · 섬유 탄소나노과 및 디스플레이가전 팀을 두되, 각 과장은 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, 디스플레이 가전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· 공업사무관 또는 행정 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⑦ ~ ⑩ (생 략)

제11조(산업자원안보실) ① ~ ⑤ (생 략)

⑥ 산업자원안보실에 자원안보 정책과 · 석유산업과 · 가스산업 과 · 산업공급망정책과 · 소재부 품장비개발과 · 철강세라믹과 · 화학산업과 · 무역안보정책과 · 무역안보심사과 · 기술안보과 및 석탄산업팀 · 광물자원팀 · 자원안전팀을 두되, 각 과장은 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서 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, 각

----- 부이사관
· 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· 공
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,
디스플레이가전팀장은 과학기
술서기관 · 서기관 · 공업사무관
· 행정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
-----.

⑦ ~ ⑩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산업자원안보실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

----- 자원안보정
책과장 · 석유산업과장 · 가스산
업과장 · 산업공급망정책과장 ·

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⑦ ~ ②① (생략)

제12조(통상정책국) ① ~ ③ (생략)

④ 통상정책국에 통상정책총괄과 · 미주통상과 · 구주통상과 · 신통상전략과 · 디지털경제통상과 · 기후경제통상과 및 중남미대양주통상팀을 두되, 통상정책총괄과장 · 미주통상과장 · 구주통상과장 · 신통상전략과장 · 디지털경제통상과장 및 기후경제통상과장은 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· 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, 중남미대양주통상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· 공업사무관 ·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.

소재부품장비개발과장--- 철강
세라믹과장 · 화학산업과장 · 무
역안보정책과장 · 무역안보심사
과장 · 기술안보과장은 부이사
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·
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
로, 각 팀장---.

⑦ ~ ⑳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통상정책국) ① ~ ③ (현
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 과학기술서기관

· 서기관 · 공업사무관 · 행정사

무관 · 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

문관-----

⑤ ~ ⑪ (생 략)

제14조(통상교섭실) ① ~ ⑤ (생 략)

⑥ 통상교섭실에 통상협정정책
기획과 · 통상협정이행과 · 통상
협정활용과 · 통상협정협상총괄
과 · 통상협정상품과 · 통상협정
서비스투자과 · 통상협정무역규
범과 · 통상법무기획과 · 세계무
역기구과 · 다자통상협력과 · 통
상분쟁대응과 및 인도태평양통
상기획팀을 두되, 각 과장은 부
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
관 · 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
관으로 보하며, 인도태평양통상
기획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· 서
기관 · 공업사무관 · 행정사무
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
다.

⑦ ~ ⑮ (생 략)

제38조(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
및 운영에 대한 특례) 「산업통
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4
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
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
각 호와 같다.

⑤ ~ ⑪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통상교섭실) ① ~ ⑤ (현
행과 같음)

⑥ -----

----- 과학기술서기관 · 서
기관 · 공업사무관 · 행정사무관
· 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
-----.

⑦ ~ ⑮ (현행과 같음)

제38조(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
및 운영에 대한 특례) -----

-----.

<신 설>

<신 설>

1. 통상정책국: 통상정책총괄과,
미주통상과, 구주통상과, 신통

1. 산업정책실 내 다음 각 목의
하부조직

가. 지역경제정책관: 지역경
제총괄과, 지역경제진흥과,
입지총괄과

나. 제조산업정책관: 자동차
과, 조선해양플랜트과

다. 중견기업정책관: 유통물
류과

2. 산업성장실 내 다음 각 목의
하부조직

가. 산업기술융합정책관: 산
업기술정책과, 산업기술시
장과, 산업규제혁신과

나. 산업인공지능정책관: 산
업인공지능정책과, 인공지
능기계로봇과, 인공지능바
이오융합산업과

다. 첨단산업정책관: 배터리
전기전자과, 첨단민군협력
과, 섬유탄소나노과, 디스
플레이가전팀

라.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:
반도체정책과

4. -----
-- 한미통상협력과, 중남미대

상전략과, 디지털경제통상과,
기후경제통상과, 한미통상협
력과

2. 통상협력국: 통상협력총괄과,
동북아통상과, 아주통상과, 중
동아프리카통상과

3. 통상교섭실: 통상협정정책기
획과, 통상협정이행과, 통상협
정활용과, 통상협정협상총괄
과, 통상협정상품과, 통상협정
서비스투자과, 통상협정무역
규범과, 통상법무기획과, 세계
무역기구과, 다자통상협력과,
통상분쟁대응과

<신 설>

양주통상팀

5. -----
-- 중동아프리카통상과, 인도
통상협력과

3. 산업자원안보실 내 다음 각
목의 하부조직

가. 산업공급망정책관: 철강
세라믹과, 화학산업과

나. 무역안보정책관: 무역안
보정책과, 무역안보심사과,
기술안보과

6. 통상교섭실 내 다음 각 목의
하부조직

가. 통상협정정책관: 통상협
정정책기획과, 통상협정이
행과, 통상협정활용과, 인
도태평양통상기획팀

나. 통상협정교섭관: 통상협
정협상총괄과, 통상협정상
품과, 통상협정서비스투자
과, 통상협정무역규범과

다. 다자통상법무관: 통상법
무기획과, 세계무역기구과,

	<u>다자통상협력과, 통상분쟁 대응과</u>
제40조의3(반도체 혁신성장지원 단) ① (생 략)	제40조의3(반도체 혁신성장지원 단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반도체 혁신성장지원단에 반 도체정책과·첨단반도체과 및 반도체생태계과를 두되, <u>각 과 장은</u> 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 관·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 로 보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<u>반도체 정책과장은</u> 부이사관·과학기 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, <u>첨단반도 체과장·반도체생태계과장---</u> .
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신 · 구 정원 대비표

■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3]

산업통상부 공무원 정원표(제35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	·	·	
·	·	·	
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	<u>24</u>	<u>17</u>	-7
·	·	·	
행정사무관	<u>64</u>	<u>32</u>	-32
·	·	·	
·	·	·	
행정주사	<u>24</u>	<u>3</u>	-21
·	·	·	
·	·	·	
<u>수석전문관 · 행정전문관 · 통계</u> <u>전문관 · 공업전문관 · 시설전문</u> <u>관 · 전산전문관 · 방송통신전문</u> <u>관 · 행정부전문관, 통계부전문</u> <u>관, 공업부전문관, 시설부전문관,</u> <u>전산부전문관 또는</u> <u>방송통신부전문관</u>	<u><신 설></u>	<u>78</u>	+78

신 · 구 정원 대비표

■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4]

산업통상부 공무원 정원표(제35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	·	·	
·	·	·	
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	<u>24</u>	<u>17</u>	-7
·	·	·	
행정사무관	<u>63</u>	<u>31</u>	-32
·	·	·	
·	·	·	
행정주사	<u>24</u>	<u>3</u>	-21
·	·	·	
·	·	·	
<u>수석전문관 · 행정전문관 · 통계전문관 · 공업전문관 · 시설전문관 · 전산전문관 · 방송통신전문관 · 행정부전문관, 통계부전문관, 공업부전문관, 시설부전문관, 전산부전문관 또는 방송통신부전문관</u>	<u><신 설></u>	<u>78</u>	+78

